■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압수물가환부신청서

※ ▭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뒤쪽의 이의 신청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전화번호/팩스번호	압수물에 대한 관계 [] 제출인 [] 피해자 [] 소유자 [] 기타()

사건번호	20 년 형제 호
피 의 자	
신청사유	

아래 압수물을 가환부 받을 경우, 훼손 · 폐기 · 양도 · 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, 귀 청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,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품 명	수 량	품 명	수 량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지방공소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
담당자확인		압제번호		증제번호	
주임검사 결정		검사			
가	부	불허이유			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

이의 신청 안내

○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**압수물 가환부 결정**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「형사소송법」 제218조의2).

○ 또한,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(고지)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(처분)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**준항고**(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)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형사소송법」 제417조).

○○ 지방공소청 ○○과

전화

팩스